

대법원 2024도14048
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 사건 보도자료

대법원 공보연구관실(02-3480-1895)

피고인이 성남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인 부동산개발 사업에 관한 사업 부지의 용도지역변경, 주거용지 비율 확대, 신속한 지구단위계획 추진 및 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등 사업 관련 각종 인허가 사항 등의 알선에 관하여 현금과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였다는 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¹⁾ 위반(알선수재)로 기소된 사안임

대법원 2부(주심 대법관 권영준)는,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, 공소사실 중 현금 2억 5,000만 원 수수 관련 이유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(대법원 2024. 11. 28. 선고 2024도14048 판결)

1. 사안의 개요

가. 당사자들의 관계

- A ⇒ B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인 2010. 7. 1.경부터 2018. 3. 13.경까지 성남시 정책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B의 측근으로서 모든 부서 업무를 총괄하고 B를 보좌함
- 피고인 ⇒ B가 출마한 각종 선거를 지원하고 B의 성남시장 초선 및 재선에 기여하는 등으로 오래전부터 A, B와 정치적 교분을 형성하였고, 성남시 소속 공무원들도 피고인과 A, B 사이의 특수 관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음

1) 이하 ‘특정범죄가중법’

- C ⇒ 부동산개발회사의 대표로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소재한 한국식품 연구원 부지를 매입하고 성남시로부터 용도지역변경을 허가받아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·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함

나. 공소사실의 요지

- 사업부지의 용도지역변경을 위한 청탁 또는 알선
 - 피고인은 사업부지의 용도지역변경을 위해 2013년 하순경부터 2014년 초순경 사이에 A에게 '이 사건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사업을 할 것'이라고 말함
- 주거용지 비율 확대를 위한 청탁 또는 알선
 - 피고인은 2014. 12. 하순경 A에게 '도시계획과에서 R&D용지 비율을 너무 높게 요구하고 있어 사업을 할 수 없다. 주거용지와 R&D용지 비율을 5:5로 고집하면 부당하다'고 말하면서 R&D용지 비율을 낮추고 주거용지 비율을 높여 달라는 취지로 부탁함
- 신속한 지구단위계획 추진 및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를 위한 청탁 또는 알선
 - 피고인은 2015. 2. ~ 3.경 및 2016. 1. 25.경 A에게 '지구단위계획을 신속하게 추진·승인해주고,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'고 요구함
- 피고인의 알선 대가 수수(구체적 범죄사실)
 - ① 현금 약 74억 5,000만 원 수수
 - 피고인은 C와 사이에 부동산개발회사가 보유한 주식 지분을 양도받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, 피고인은 그 주식매매계약에 근거하여 부동산 개발회사를 상대로 주식양도 소송을 제기한 뒤, 그 민사소송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 C로부터 합계 약 74억 5,000만 원 현금 수수
 - ② 현금 2억 5,000만 원 수수
 - 주위적 공소사실 ⇒ 피고인은 C로부터 합계 2억 5,000만 원 현금 수수

- 원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 ⇒ 피고인은 C로부터 합계 2억 5,000만 원을 차용함으로써 차용금에 대한 액수 미상의 금융이익 상당 수수
- ③ 함바식당 사업권 상당 이익 수수
 - 피고인은 C로부터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아 식당을 운영하면서 매출을 올림으로써 액수 미상의 함바식당 사업권 상당의 이익 수수

2. 소송경과

가. 제1심 ⇨ 일부 유죄[징역 5년, 추징 6,357,330,333원]

- ①, ③ 부분 유죄
- ② 부분 이유 무죄
 - 피고인이 알선의 대가로 현금 2억 5,0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

나. 원심 ⇨ 일부 유죄[징역 5년, 추징 6,357,330,333원]

- ② 부분 공소장변경에 따른 파기
- ② 중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 이유 무죄
 - 제1심과 같은 이유
- ①, ③ 및 ② 중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 유죄
 - 피고인은 C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성남시 공무원에게 부탁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A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청탁하였는데, 이는 특정범죄가중법 제3조의 '알선'에 해당하고,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히 '합리적인 의견 개진'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,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도 어려움
 -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청탁이 부정한 청탁인지를 명확히 밝혀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거나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움

- 피고인과 C 사이에 실질적인 동업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, 피고인의 성남시 공무원에 대한 알선·청탁이 자기 사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
- 피고인이 A 등 성남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 등에 대한 알선·청탁의 대가로 유죄 부분 현금과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음

▣ 피고인 상고

3. 대법원의 판단

가. 쟁점

- ▣ 피고인의 행위가 특정범죄가중법 제3조의 '알선'에 해당하는지 여부
- ▣ 피고인이 알선의 대가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는지 여부
- ▣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 공소장변경이 필요한지 여부

나. 판결 결과

- ▣ 상고 기각(원심 수긍)

다. 판단 내용

- ▣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(알선수재)죄에서의 '알선 행위', '알선에 관한 대가', 고의, 공소장변경, 위법성의 인식 및 법률의 착오, 화해권고결정의 창설적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